

지식재산 장 제10.30조의 각주 14에 관한 양해

이 협정의 제10장(지식재산)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안, 양 당사국은 명확화와 현재 상태 유지를 위하여 제10.30조에 새로운 각주 14를 포함할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영국에서 두 가지 유형의 미등록 디자인권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데에 양해를 공유한다: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3편에 규정된 자국 내 미등록 디자인권, 그리고 유럽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이사회규정(EC) 제6/2002호에 규정된 유럽공동체 미등록 디자인권.

양 당사국은 이 협정 제10.30조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을 통하여 영국법에 준용된 유럽연합의 유럽공동체 미등록 디자인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양 당사국은 이것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유럽공동체 미등록 디자인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양해에 기초하여, 양 당사국은 각주 14가 이러한 명확화를 제공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영국은 각주 14의 포함이 자국 내 미등록 디자인권 또는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을 통하여 영국법에 준용된 유럽공동체 미등록 디자인권으로 디자인이 보호를 받을 자격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따라서 영국은 이전부터 이러한 권리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 또는 인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